

일본	5월 수입제도 모니터링
----	--------------

I	수입제도 변경사항
---	-----------

1. 통관 일반

- 출항전보고제도 도입(2014년 3월 시행)
 - 2012년 3월 30일, 관세정율법등의 일부 법개정에 의해 출항전보고제도 도입
 - 일본에 입항할 예정인 컨테이너 선적 선박이 출항 24시간 전에 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 출항전보고제도의 개요

보고대상		일본에 입항하려고 하는 외국무역선에 선적된 해상 컨테이너 화물 ※단, 빈 컨테이너 및 플랫폼 컨테이너 외, 도입당초에 일본에 하역하지 않는 통관화물은 대상외
보 고 의 무 자 및 내 용	선박회사	선박회사가 파악하고 있는 적하정보(오션 B/L에 근거한 적하정보)
	이용운송사업자	이용운송사업자가 파악하고 있는 적하정보(하우스 B/L에 근거한 적하정보)
보고방법(전자적보고 원칙)		NACCS(수출입, 항만관련정보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적 보고
보고기한		원칙적으로, 외국의 선적항을 출항하기전 24시간전 까지 보고 ※단, 한국 및 중국 등 근린국가를 선적항으로 하는 일정범위 내의 근해항로에 대해서는, 제도정착까지 당분간 보고기한을 선적항에서 출항전까지로 함
벌칙		보고기한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경우, 1년이하의 징역 혹은 50만엔 이하의 벌금형

- 세관에서는 본제도에 의해 보고된 적하정보의 리스크 분석을 실시하여,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관세법 106조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본에의 하역 일시 정지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NACCS란?
 - 수출입, 항만관련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입출항하는 선박, 항공기 및 수출입되는 화물에 대해서, 세관 혹은 관련정부기관에 대한 수속 및 관련하는 민간업자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임(<http://www.naccs.jp>)
- 출처 : 일본세관(http://www.customs.go.jp/news/news/advance3_j/index.htm)

2. 검역 일반

○ 제3국산 제조식품 관련 검사증명서 인증제도 실시(2013.4.1자)

- 최근 일본정부에서는 수입식품의 국제화, 다변화 시대를 맞이하여 일본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수출국에서 바로 제조되지 않고 제3국에서 제조되어 한국을 경유 또는 직접 일본으로 수출된 경우에도 수출국 공적검사기관(한국)에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

예) 한국의 무역업체가 중국에서 제조한 명란젓을 지금까지는 한국에만 수입 유통해 왔으나, 동일한 제품을 일본에도 수출하고 싶은 경우에 기 한국내 공적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일본 검역시 인정하겠다는 제도임
→ 기존 수출국 공적검사기관 인증제도를 확대하여 시험검사 중복실시를 생략하고 행정수요 절감 효과

○ 공적검사기관 인증 제도

- 일본 후생노동성은 수출국의 공적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바, 수출업체가 한국내 검사기관에서 발급된 시험성적서를 첨부시 일본 수입검역단계에서 동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별도 검사없이 통관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
- 현재 일본정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등 54개 공적검사기관과 4개의 지정검사기관등 총58개의 검사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 후생노동성은 수입식품이 자국에 처음으로 수입될 경우 수입업체가 지정검사기관(민간검사기관)에 반드시 식품위생검사를 받도록 자주검사제도를 도입

-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업체일 경우 또는 수입업체가 처음으로 해당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험검사를 받도록 하는 「자주검사」 제도를 운영. 단, 과거에 동일한 제품이 동일한 수출입업체에 의해 수입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한해서 동 시험성적서를 인정하여 몇 번씩 수입 되더라도 동 성적서로 대체 적용 가능

○ 신속한 통관 및 검사비용 절감효과

- 후생노동성이 인증한 한국내 검사기관에서의 시험성적서 제출시 일본검역소에서는 별도검사 없이 신속히 통관되며 검사비용 절감되는 효과가 큰 제도임

※ 한국내 검사없이 일본 도착후 검사할 경우 검사기간 동안 통관대기

※ 검사비용 : 일본 78만원/ 한국 20만원(일부 검사 불가 항목 제외)

○ 시사점

- 동제도는 현지국 일본도착시 식품위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함으로 동 제도를 널리 알려서 수출전 반드시 국내 검사를 받고 수출토록 관계기관 및 업체에 전파 필요
- 현지 일본 검역소에서 요구하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험분석법 규정등을 통해 동제도가 효과적으로 기능토록 제도 개선 필요

II

수입제도 현안

1. 검역 불합격, 폐기, 반송 사례

○ 4, 5월 식품위생법상 위반사례

	품명	제 조자(화주)	내 용	수입자명	조치상황
1	깻잎	B상사	11조3항에 근거한 경강을 해칠우려가 없는 량을 초과한 잔류농약(지니코나 졸 0.04ppm 검출	주식회사 G	일부판매, 잔여폐기조치

- 한국계 통신판매 업체로 수입물량 24상자 기판매. (지니코나졸의 기준치는 0.01PPM). 1년간 30% 모니터링 검사 강화 처분(5/9일자)

<별첨> 제 3국 시험성적서 인정제도 관련 후생노동성 공문 번역

식안수발0401 제2호

식안검발0401 제4호

2013년 4월 1일

각 검역소장 귀하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 수입식품안전대책실장

(공인 생략)

기획정보과 검역소 업무관리실장

(공인 생략)

외국 공적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정제도에 관하여

표제 관련하여서는 수입수속의 간소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2년 3월 31일부 환식 제77호 '수입검사수속 등의 개선에 대하여'에 의해 외국 공적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금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에서 검사를 실시한 시험성적서의 경우라도 수출국에서 검사한 것처럼 동일하게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 문제발생시 대응이 가능한 국가의 경우에는 동 시험성적서를 받아들여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 공적검사기관의 취급에 관하여서는 별첨에 게재한 내용대로 실시하기로 하였으니 수입업체등 관계자들에게 동내용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국 공적검사기관 리스트를 하기 URL에 게재하였으니 수입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외국 공적검사기관 리스트

1. 세계 모든 나라 및 지역에서 수출된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장난감의 시험성적서를 검역소에서 인정 가능한 외국공적검사기관
2. 해당국 및 지역에서 수출된 식품, 첨가물, 기구용기포장, 장난감의 시험성적서를 검역소에서 인정 가능한 외국공적검사기관

(참고) 외국 공적검사기관리스트

<http://www.mhlw.go.jp/topics/yunyu/5/index.html>

사무연락

2013년 4월 1일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식품위생담당자 귀하

후생노동성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감시안전과 수입식품안전대책실

외국공적검사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의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2013년 2월 5일부 '수출국 공적검사기관에 대하여' 문서 관련하여 회신 및 협력해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회답해주신 결과를 별첨내용대로 검역소에 통지하고 하기 URL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 귀국에서 외국 공적검사기관의 취급 변경 등이 생기시면 바로 아래 연락처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 공적검사기관 일람

<http://www.mhlw.go.jp/topics/yunyu/5/index.html>

연락처

기획정보과 검역소업무관리실 수입감시계

03-5253-1111(내선: 2469)

이상.